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8. 9 선고 2023가단8603 판결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전 문

원 고 A

피 고 1. B

2.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성

담당변호사 오승준

변 론 종 결 2024. 7. 5.

판 결 선 고 2024. 8. 9.

주 문

-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피고 B은 1,45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1. 1.부터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C은 7,42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2. 11.부터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 B를 잘 알지 못하나, 피고 C이 원고에게 피고 B에게 공사대금을 대신 지급하면 갚아주겠다고 하였으나 현재까지 변제하지 않으므로, 피고 B은 원고로부터 2013. 10. 17. 받은 1,000만 원과 2013. 11. 1. 받은 450만 원 합계 1,450만 원을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갑 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계좌에서 피고 B의 계좌로 2013. 10. 17. 1,000만 원과 2013. 11. 1. 450만 원이 이체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 B이 위 돈을 법률상 원인 없이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 C에 대한 소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2. 5. 10.부터 2013. 12. 11.까지 수회에 걸쳐 D으로부터 조달한 5,740만 원과 원고의 돈 9,670만 원 합계 1억 5,410만 원을 피고 C의 계좌 또는 피고 C이 지정한 피고 B의 계좌에 입금하였다. 피고 C은 원고에게 원고, D에게 지급한 돈을 제외하고 남은 7,420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을 1 내지 4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C은 2021. 10. 14. 원고가 피고 C로부터 800만 원을 지급받는 것을 조건으로 부제소합의를 하였고, 원고는 2021. 10. 19.부터 2022. 1. 24.까지 피고 C로부터 8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는 부제소합의에 반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피고 C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광열